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업자 평가기관 추가·확대 》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72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77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업자 평가기관 추가·확대(안 제61조)	3

I. 권영진의원 대표발의(제220477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권영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4. 10. 18.

다. 회 부 일 : 2024. 10.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2012. 5. 10. 지정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4. 1. 31.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평가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평가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개정).

3. 검토의견

가.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업자 평가기관 추가·확대(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61조(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검사¹⁾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여부 및 품질검사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관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확대하려는 것임.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현행법 제55조²⁾에서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제60조³⁾에서는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를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 제61조에서는 제60조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동 조항을 근거로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지정하여 품질검사 대행기관 평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⁴⁾.

그런데, 지난 2024년 1월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⁵⁾하면서, 그간 공공기관 지정으로 인해 인력과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용·집행하기 어려워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한 바 있음.

이로 인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되어 현행법 제61조에 따른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평가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2024년 12월 현재,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는 업무 공백

4) 참고자료 1 참조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1.31.(수) 15:00

- 기획재정부는 '24.1.31(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하여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총 327개 기관(전년 대비 20개 감소)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 간의 경영효율화 등 생산성 제고 노력과 아울러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과학기술 선점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혁신적·도전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금번 공운위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하기로 하였다.

- 주요 지정해제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22개 기관

최소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한시적으로 기 업무를 수행하였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평가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⁶⁾.

개정안은 이러한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평가하는 평가 업무의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대행기관 평가기관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⁷⁾을 추가·확대하여,

현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하나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6) 국토교통부는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 대행기관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타 공공기관을 품질검사 대행기관 평가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하기 위해 노력 중이나, 새롭게 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동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연구기관의 설립)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2. 한국식품연구원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3. 삭제 <2011.12.31>
3. 삭제 <2024. 1. 26.>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6. 삭제 <2024. 1. 26.>
6. 한국한의학연구원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8. 한국전기연구원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 한국화학연구원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 한국원자력연구원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1. 한국재료연구원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품질검사 대행기관 평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기관 평가업무의 업무 공백 해소 및 평가기관 간 경쟁을 통한 평가업무 수준의 질적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고, 국토교통부도 위와 같은 사유로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3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 현황 】

구 분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2호)	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포함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3호)	안전영향평가기관 및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기관의 자격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포함함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4호)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관리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제2204775호)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협력체계의 관계기관의 범위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추가함

문 의 처
02)6788-5591

자료: 국토교통부

□ 품질검사 대행기관 평가 업무 개요

- (등록요건) 품질시험·검사 대행기관의 등록, 변경등록 시 요건 확인
- (적정성평가) 품질시험의 적정성(사후관리) 평가를 위한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조사 수행
 - (평가반) 총 29명*이 2인 1조로 구성하여 평가 실시
 - * 건기연 5명, 외부 24명(임기 3년, '25.12.31.까지)
 - ** (분야별 평가일수) 일반(2.0일), 토목(1.5일), 건축(1.5일), 특수분야(1.0일)

□ 추진 실적

- 정부에서 편성하는 예산(법정민간대행사업비)으로 신규 및 변경 등록, 기존 품검기관에 대한 적정성 평가 실시
 - 품검기관에서 거짓성적서 발급을 못하도록 '23년부터 불시점검 및 지방국토청에서 특수분야에 대한 적정성 평가(39개 업체)

<건기연의 품검기관 적정성평가 대상>

(단위 : 실적/계약)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83	85	107	121	98	173
신규등록	20	18	15	22	20	16
변경등록	12	9	7	14	16	14
적정성 평가	51	58	85	85	62	143
등록업체수	174	172	179	180	190	191
예산(백만원)	150	150	250	250	250	500

<건기연의 품검기관 적정성평가 결과>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정조치 건수	872	1,059	1,172	1,405	839	925
- 위반건수*	17	11	28	27	21	73
거짓성적서	1	2	6	4	1	31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1년이내, 6개월) 및 과태료 등 해당

참고자료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설립일자	1983.6.11.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설립목적	건설 및 국토관리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성과 확산을 통해 건설산업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경제·사회 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국가기반시설 성능 고도화, 국토재해 대응 기술, 친환경 국토조성 기술, 건설기반 융합 기술, 고성능 건설자재 기술 연구개발 ○ 건설, 국토 기술 정책 수립, 건설분야 국가표준 및 기준 개발, 기술사업화 및 중소·중견기업 기술지원 ○ 건설공사 및 기자재 품질인증, 인·지정, 검사 및 시험, 평가, 인증								
최근 대표적 연구성과	○ DNA 기반 노후 교량구조물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및 활용기술 개발 - 500만건 이상의 노후화 데이터 확보 및 관리 최적화 기술, 미래 예측 기반 교량 노후도 평가 정확도(90% 이상) 향상 기술 개발 - 다양한 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교량 스마트 유지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 주거단지 음식물쓰레기 이용 발전소 규모의 청정 연료 생산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친환경·저탄소·고발열량 청정연료 생산기술 개발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플랜트 에너지 효율 최적화 기술개발 및 청정연료 실 발전시설 적용성 평가 ○ Tech-lead형 액상화 피해 예측 가시화 시스템 및 고효율/저비용 액상화 보강공법 개발 - 지중구조물 피해 예측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3차원 액상화 위험지도 개발 및 세계 최고수준의 고해상도 액상화 위험지도 구축 기술 개발 - 전세계 유일의 국토지반정보 DB와 액상화 위험지도를 연동하여 자동 갱신 - 구조물 사용성을 유지하면서 광범위한 액상화 위험지반을 효율적으로 보강이 가능한 고효율 저비용 보강공법 개발(기존 공법 대비 공사비 15% 이상 절감) ○ 우주건설 환경 모사 및 우주기지 건설 기초원천 기술 개발 - 현지자원활용 마이크로파 소결 블록(10cm급) 제조 및 진공 마이크로파 소결 기술 - GPS 음영지역의 1 lux 이하 저조도 환경에서 정확도 1m 급의 고정밀 3차원 지형 모델 구축을 위한 무인 지형 정보화 기술 개발 - 저전력(40.5 W), 경량(8.7 kg), 소형화(0.2 m3), 시추심도(1 m), 14 MPa 급 우주용 시추장비 개발								
조직/인력 (’24.11.14.)	조직규모		정규인력 전체 인력현황(명)						
	2부원장, 13본부, 3연구소, 1위원회, 1부, 1스쿨, 8센터, 21실, 1팀		연구직	기술직	행정직	기능직	무기직	합계	
			524	37	65	45	22	671	
			연구직 인력현황(명)						
			박사		석사이하		계		
		390		134		390			
수지총괄 (사업계획 및 예산) *이월금 제외	수 입(백만원)			지 출(백만원)					
	항목	’23예산	’24예산	항목	’23예산	’24예산			
	○ 정부출연금	69,782	60,320	○ 인건비	57,937	59,378			
	○ 자체수입 등	119,507	103,109	○ 연구직접비	119,098	92,081			
	○ 대체조정	-	-	○ 경상운영비	8,215	8,431			
				○ 시설비	1,039	1,039			
			○ 기타	3,000	2,500				
계		189,289	163,429	계		189,289	163,429		